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 개정 이유

규칙의 제명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의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제명 정비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개정  
나. 「학교급식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른 조문 정비

- 상위 조례명 변경 반영 및 “무상급식” 대신 “학교급식”으로 용어 일원화 (안 제1조, 제2조, 제3조, 별지 제13호서식)
- 상위 조례에 맞춰 위원회 명칭 및 약칭 변경(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관계법령 개정사항에 맞춰 불필요한 조항 및 별지 서식 삭제 (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다. 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정비(안 제13조제1항)

라.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명 자구수정 (안 제15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학교급식법」
-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1) 입법예고 : 2023. 4. 19. ~ 2023. 5. 9.(20일간)
- 2) 신·구조문대비표 : 첨부
- 3) 규제심사·위원회 협의 : 원안동의
-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5)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무상급식 사업”을 “학교급식 사업”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지원대상자”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장을 말한다.

제3조 중 “서부교육지원청”을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으로, “무상급식”을 “학교급식”으로 한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 “(위원회 운영)”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조례 제9조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는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의 회의진행과 위원회 운영”를 “심의위원회의 회의 진행과 사무 처리”로 한다.

제9조제3호 중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 심의·의결”을 “심의위원회 심의·의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구성·운영하고 운영결과는 위원회 회의 시 보고해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운영위원회 운영결과는 심의위원회 회의 시 보고해야 한다.

제15조 제목 외 부분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무상급식 식재료”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며, 같은 서식 중 “(인또는서명)”을 “(인 또는 서명)”으로 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위원장”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u>」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친환경 <u>무상급식 사업</u>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p>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원대상자”란 「<u>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u>」(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장을 말한다.</li> <li>2. “지원신청서”란 <u>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신청서</u>를 말한다.</li> <li>3. “위원회”란 <u>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심의위원회</u>를 말한다.</li> </ol> <p>제3조(지원기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u>서부교육지원청</u>과 각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u>친환경 무상급식 경비 및 식재료 단가</u>를 지원기준으로 하여 각 학교 및 유치원, 보육시설 지원 금액을 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 「<u>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u>」----- ----- <u>학교급식 사업</u>-----.</p>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지원대상자”란 「<u>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u>」(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장을 말한다.</p> <p>제3조(지원기준) ----- ----- <u>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u>----- ----- <u>학교급식</u> ----- -----</p>

지원하도록 한다.

제4조(지원신청) ① 구청장은 다음 연도 친환경 무상급식 경비 및 식재료 지원 수요조사 개요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연도에 친환경 무상급식 경비 및 식재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요조사서를 매년 9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요조사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체계) ① 구청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심의 상정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계획을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는 친환경 무상급식, 쌀, 식재료 사용계획을 첨부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보조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 시기는 지원자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  
<삭 제>

<삭 제>

④ 제3항에 따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받은 구청장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계획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친환경 식재료 공급) ①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학교급식에 필요한 친환경 식재료 공급체계를 별도로 구축하기 전까지는 가급적 서울특별시 친환경 유통센터의 식재료를 우선적 공급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친환경 식재료 중 친환경 쌀은 기존의 협약서에 따른 친환경 쌀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아야 한다.

③ 친환경 쌀을 제외하고 서울특별시 친환경 유통센터를 이용하지 않은 식재료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친환경 농·축산물 공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정산) 지원대상자는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보조금을 분기별로 정산하고 그 외의 친환경 급식 관련 사업은 구청장이 정하는 시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삭 제>

<삭 제>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운영) ① ----- 조례 제9조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② (생략)

③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 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 지원대상자,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진행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지) 구청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지할 수 있다.

1. 2. (생략)

3. 위원회 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 4. (생략)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개최 전에 위원장에게 심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심의위원회는 -----  
-----  
-----  
-----.

④ ----- 심의위원회의 회의 진행과 사무 처리-----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지) -----  
-----  
-----  
-----  
-.

1. 2. (현행과 같음)

3. 심의위원회 -----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  
----- 심의위원회-----.

1. ~ 4. (현행과 같음)

②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급식지원센터 운영) ①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라 급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고 운영결과는 위원회 회의 시 보고해야 한다.

② ~ ⑥ (생략)

<신설>

제15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청 협 서 약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식재료 지원 사업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심의과정에서 이유 여부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자 :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13조(급식지원센터 운영) ① -----  
-----  
-----  
-----  
-----  
-----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운영위원회 운영 및 회의 결과는 위원회 회의 시 보고해야 한다.

제15조(준용)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삭제>

【별지 제9호서식】 <삭제>

【별지 제13호서식】

**청 협 서 약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사업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심의과정에서 이유 여부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자 :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관계 법령

## □ 학교급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공급업자”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급식에 관한 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학생,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등) ①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급식지원센터) ⑤ 급식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